

제338회 경상북도의회(임시회)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3. 3. 10.(금)

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

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(최병준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: 최병준·김희수·도기욱·한창화·박성만·허 복·

백순창·이우청·박순범·이동엽·이춘우·이형식 의원(12명).

2. 제안이유

- 도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-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를 규정(안 제5조)
-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4. 관련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31조의 2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의2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불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불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불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불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3. 2. 28. ~ 3. 6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20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필요성

- 도내 각종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재난발생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안전 환경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신체적, 사회적,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
- 안전 환경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¹⁾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도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함.
- 제1조,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,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를 부여함.
- 제4조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13세미만 어린이,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²⁾

1)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

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³⁾으로 규정함

- 제5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⁴⁾에 부합되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.
- 제6조는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관련 기관·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·위탁하거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제7조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홍보의무를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」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경상북도내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,

2) 장애인복지법 제32조

① 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3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
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4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
2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현재 도내 안전취약계층이 126만6천여명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,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등의 안전을 점검하고,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며, 감염병·미세먼지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하는 등 안전환경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,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할 때,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고,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향후 지원 대상의 범위에 따라 추가 소요비용이 큰 폭으로 변동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 1

경상북도 주민등록기준 안전취약계층 인구현황

□ 경상북도 주민등록기준 안전취약계층 인구현황('22.12월말 기준)

구분	인구현황(명)	비고
13세 미만 어린이	253,767명	
65세 이상 노인	618,275명	
등록 장애인	182,835명	
기초생활수급자	147,353명	
차상위계층	64,450명	
총 계	1,266,680명	